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 근거 마련 등〉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92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 근거 마련 등	2
2. 개정안 부칙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19.

3. 회 부 일 : 2026.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 근거 마련 등(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차별로 금지시키고,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장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차별의 금지) ① (생략)	제4조(차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제38조의2(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의 차별</u> 제38조의2(별칙)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4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장</u>
---	---

나. 검토의견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¹⁾, 현행법은 특수학급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7조의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과 정	설치 학급 수
유치원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u>1인 이상 4인 이하인</u> 경우 2개 이상 - 4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u>1인 이상 6인 이하인</u> 경우 2개 이상 - 6인을 초과하는 경우
고등학교	1개 - 특수교육대상자가 <u>1인 이상 7인 이하인</u> 경우 2개 이상 - 7인을 초과하는 경우

□ 그러나, 각급학교의 장의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바³⁾, 시·도교육청의 경우 조례로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⁴⁾⁵⁾.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법령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경

3) 서울 사립고 200곳 중 특수학급 있는 곳은 21곳...장애인 학부모 근심, 한겨레, 2025.10.02.

4)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거부 안된다”...조례추진, 뉴시스, 2024.07.22.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상임위]”, 쿠키뉴스, 2025.04.15.

5)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는 교육감에게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우,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바, 특수학급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학교장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현재 특수학급 미설치가 도심 과밀학교의 물리적 공간 부족, 특수교사 정원 미배정 등 각급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 등이 개정안에 따른 처벌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개정안의 경우 이를 지역 교육 환경에 맞춰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들을 국회가 직접 법률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법률유보의 원칙⁶⁾), 개정안은 차별에 대한 예외 사유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하여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

6)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27

7)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 검토 의견임.

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임⁸⁾.

8) 17개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다만, 경기·부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 (경기·부산 일부 현장 의견) ① 지역, 학교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한 자구 강구 대책 방안 마련 필요 ② 전체 학급 수 대비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지원 확대 방안 요청 ③ 유희공간 부족, 인력 확보 등 특수학급 설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규정이 우선 도입될 경우 학교 현장 부담 증가 우려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부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⁹⁾,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¹⁰⁾, 개정안의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9)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

1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